

청주교육대학교 교원임용 규정

제정 1988. 2. 24.

24차 개정 2012. 07. 16. 규칙 제1295호

25차 개정 2016. 04. 27. 규칙 제1409호

26차 개정 2016. 05. 17. 규칙 제1421호

27차 개정 2017. 03. 01. 규칙 제1433호

28차 개정 2017. 08. 08. 규칙 제1446호

29차 개정 2017. 12. 29. 규칙 제1455호

30차 개정 2018. 03. 27. 규칙 제1470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주교육대학교 교원의 임용에 관한 자체내규를 정하여 인사관리의 합리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본 대학교의 교원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교원”이라 함은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 재계약, 재임용, 승진임용을 말한다.

제 2 장 인사위원회

제4조(인사위원회) ① 교원의 임용동의 및 기타 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교육대학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교무처장.학생처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5인의 조교수이상의 교원으로 조직하되 여성교원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조직한다.

③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 3 장 자 격

제5조(교원의 자격) ① 교원의 자격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② 교원의 연구실적연수 및 교육경력연수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연구

실적 및 교육경력연수환산인정을<별표1>과 같다.

제 4 장 임용기간

제6조(임용기간) ① 교수는 교육공무원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삭제 (개정 2009.6.30)

③ 정년까지 임용할 교수를 인사위원회에 임용을 동의요청하기에 앞서 정년보장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삭제

⑤ 부교수 및 조교수의 임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부 교 수 : 10년

2. 조 교 수 : 4년

3. 삭제

4. 삭제

⑥ 정년까지 임용되는 교원의 정수는 교원 배정정원의 100분의 85 이내로 한다.(신설 2017.3.1.)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보장임용을 받지 못한 교원은 계약기간을 10년 이내로 정하여 임용한다.(신설 2017.3.1.)

제7조(임용기간의 계산) ① 임용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재임 중에 승진 및 전직 또는 강임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다시 그 기간을 계산한다.

② 임용기간이 학기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본다.

③ 제6조 제5항의 임용기간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2호(군복무).제4호(법의 무수행).제5호(학위취득 목적의 해외유학).제6호(국제기구 고용).제7호(임신 및 출산).제8호(연수기관의 연수) 또는 제44조 제2항(국회의원인 교원)에 의한 휴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5 장 신규임용

제8조(임용의 원칙) ① 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교원의 신규채용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5조의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하여야 한다.

1. 근무기간

가. 교수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나. 부 교 수 : 10년

다. 조 교 수 : 4년

라. 삭제

2. 급여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보수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당

3. 근무조건

담당시간은 청주교육대학교 강사료지급 규정의 책임시간 이상으로 하며 소속, 담당과목 및 연구실 등은 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업적 및 성과

연구실적.논문지도.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계약서에 명시한다.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가.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전임교수는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재계약 심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가항의 신청에 의거 인사위원회는 재계약 대상자의 계약조건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 해당 직위의 임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 심사가 완료되면 근무기간 만료 2월 전까지 그 결과를 서면으로 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재계약에 따른 계약서는 별지 제1호의 서식을 따른다.

6.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⑥ 총장은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다.

제8조의 2(신규임용 자격) ① 신규 임용할 교원은 제5조 제1항에 자격을 갖추고 채용하고자 하는 담당교과 또는 초빙전공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라야 한다. 다만, 예.체능계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다.

② 삭제

제8조의 3(신규임용자의 직급) ① 신규임용자의 직급은 조교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경력, 연구경력, 기타경력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상위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제9조(신규채용) ① 교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전체 신규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해까지의 누적 채용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하되, 연간 채용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채용인원이 3명 이상이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

제9조의 1(신규임용후보자 선정) 교원의 신규임용후보자 선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규임용후보자는 서류심사.전공적부심사.연구실적심사.교육능력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2. 삭제
3. 전공과 관련되는 특수분야의 전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실기나 기타 방법으로 시험을 과할 수 있다.

제10조(심사위원) ① 서류심사위원 및 전공적부심사위원은 3명으로 하되, 총장이 초빙전공분야와 관련 있는 학내 교원 중에서 2명을 지명하고, 타 대학 교원 중에서 1명을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대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학내 또는 타 대학 교원 중에서 3명을 위촉한다.(개정 2016.5.17.)

② 삭제

③ 연구실적심사위원은 3명으로 하되, 총장이 초빙전공분야를 전공한 학내 교원 중에서 2명을 지명하고, 타 대학 교원 중에서 1명을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대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학내 또는 타 대학 교원 중에서 교원 3명을 위촉한다.(개정 2016.5.17.)

④ 교육능력심사위원은 해당학과 교수 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학과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대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교무처장을 포함하여 학내 또는 타 대학 교원 중에서 교원 7인 이내로 위촉하고,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한다.(개정 2016.5.17.)

⑤ 면접심사위원은 총장.교무처장.학생처장.해당 학과 교수 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총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대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교무처장.학생처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학내 또는 타 대학 교원 중에서 교원 7인 이

내로 구성하고 총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6.5.17.)

⑥ 제3항, 4항 및 5항의 경우 총장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의 지명 또는 위촉 사실이 사전에 응시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전형단계 및 내용) 전형은 각 응시자에게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전형단계별로 순차로 실시한다. 다만, 각 전형단계별로 일정 기준이하의 탈락시킬 수 있으며, 탈락한 응시자는 그 후 전형단계의 심사를 하지 않거나 응시를 불허한다.

1. 기초심사 :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등의 심사

가. 서류심사 : 학력 및 경력 심사

나. 전공적부심사 : 초빙전공분야와의 일치 여부 심사

2. 전공심사 :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의 심사

가. 연구실적심사 : 연구실적의 질적 수준

나. 교육능력 심사 : 담당할 교육과정 영역의 공개수업 심사

3. 면접심사 : 대학교원으로서의 인성 및 학문적 자세 심사

제11조의 2(최종합격자 선정) ① 교무처장과 해당학과장은 각 전형단계별 점수를 합산하여 다득점자순으로 2명을 총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교무처장이 각 전형단계별 점수를 합산하여 다득점순으로 2명을 총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6.5.17.)

② 총장은 제1항에 의하여 최종합격자 선정권을 갖는다.

제11조의 3(교수공개채용관리지침) 교원의 공개채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심사기준 및 방법은 “청주교육대학교 교수공개채용 관리지침”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6 장 승진임용

제12조(승진시기) 승진임용 시기는 연2회(4월 1일, 10월 1일자)로 한다.

제13조(승진임용대상자 결정 기준) ① 승진임용대상자는 교육경력.연구실적.학생지도능력 및 근무상황을 종합 참작하여 총장이 결정한다.

② 승진임용을 위해서는 청주교육대학교 교수업적평가 규정에 의한 교육 및 연구영역에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구분	최소소요기간	최저필요점수	
		교육	연구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조교수→부교수	4년	240	270
부교수→교수(정년보장)	5년	300	335

제14조(승진 소요기간) ① 승진임용에 소요되는 직명별 최저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다.

부 교 수 → 교 수 5년

조 교 수 → 부 교 수 4년

삭제

② 승진 소요기간 산정에 있어 타 대학의 동일직명 이상의 재직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본 대학에 신규임용 및 전입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제1항에 의한 승진임용 소요연수가 충족되더라도 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휴직, 직위해제 및 징계(정직) 처분 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 및 7호의2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승진 소요기간에 포함한다.(개정 2018.3.27.)

④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승진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승진 임용 할 수 있다.

제15조(승진임용 보류) ① 제14조 제1항의 최저 소요기간이 경과된 이후라도 직명별 인원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승진임용을 보류할 수 있다.

② 해외유학 및 해외연수로 휴직한 자는 복직한 후 6월이 경과하여야만 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제16조(승진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개정 2018.3.27.)

1. 징계의결 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성적 관련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 공금의 횡령·유용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가. 강등·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제 7 장 재 계 약

제17조(재임용 시기) 삭제

제17조의 1(재계약시기) ①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전임교수는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재계약 심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재계약기간) 직급별 재계약 기간은 아래와 같다.

1. 부 교 수 : 10년
2. 조 교 수 : 4년
3. 삭제

③ 계약제로 임용된 전임교원의 재계약을 위해서는 청주교육대학교 교수업적평가 규정에 의한 교육 및 연구영역에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구분	재계약기간	최저필요점수	
		교육	연구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조교수	4년	240	260
부교수	10년	600	620

④ 전항의 신청에 의거 인사위원회는 재계약 대상자의 계약조건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 해당 직위의 임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심사가 완료되면 근무기간 만료 2월 전까지 그 결과를 서면으로 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재계약에 따른 계약서는 별지 제1호의 서식을 따른다.

제18조(재임용 시기) 삭제

제19조(조교의 재임용) 삭제

제20조(재임용 심사) 삭제

제 8 장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한 임용(재임용)

제20조의 1(적용대상) 종전의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어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조교수이상의 교원에게 적용한

다.

제20조의 2(근무기간) 직급별 임용기간은 아래와 같다.

1.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부 교 수 : 10년
3. 조 교 수 : 4년
4. 삭제

제20조의 3(임용절차) ① 총장은 임용기간이 종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근무기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해당교원에게 임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재임용되기 위해서는 청주교육대학교 교수업적평가 규정에 의한 교육 및 연구영역에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구 분	임용기간	최저필요점수	
		교 육	연 구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조 교 수	4년	240	260
부 교 수	10년	600	620

③ 제1항의 심사를 위한 기준과 세부적인 절차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교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0조의 4(업적평가) ① 총장은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 연구 등에 관한 업적을 평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적평가 결과를 교원임용 심사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업적평가에 관한 규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 9 장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제21조(조직) ①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총장이 지명하는 7인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제22조(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 중에서 각 1인을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교무주무자를 당연직으로 한다.

제23조(회의의 소집) 위원회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4조(심사내용)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총장이 교원을 정년까지 임용하고자 할 때의 그 적격여부에 관한 사항
2. 교육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삭제(개정 2017.8.8.)
- ③ 정년보장 적격여부는 별표 2의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평정표에 따라 심사한다.(개정 2017.8.8.)
- ④ 삭제(개정 2017.8.8.)

제2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6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한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위원회의 보고내용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임용의 동의요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 10 장 연구실적심사

제27조(연구실적물 제출) 신규임용,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교원 임용예정자는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 제28조(연구실적 인정기간 및 편수) ① 신규임용의 연구실적은 최근 4년 이내 300퍼센트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석·박사논문 제외)(개정 2017.3.1.)
② 승진임용의 연구실적은 승진 소요기간 이내 400퍼센트 이상을 공인된 국제학술지 또는 한국연구재단등재 학술지 내지 등재후보 학술지 또는 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연구실적물에 대한 인정여부는 학술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하고 제29조 1항 및 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한다.(개정 2017.3.1.)

③ 정년보장교원 임용의 연구실적은 최종 임용기간이내 400퍼센트 이상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과 동시에 정년보장교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의 연구실적으로 갈음한다.(개정 2017.3.1.)

④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취득 논문은 인정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되, 그 인정은 1회에 한한다.

제29조(연구실적물 심사) ① 연구실적은 해당 전공분야의 3인 이상이 심사하되, 심사대상자의 직위이상의 자로 위촉하고 그 중 1인 이상은 타교에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석.박사 학위 논문은 심사를 생략한다.

② 연구실적 심사평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승진임용은 각 편이 평균 “우”(4.0) 이상이어야 하며, 심사결과 평균 “우”(4.0) 미만일 경우 총장은 임용예정자에게 미달하는 만큼의 다른 연구실적물을 제출받아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제학술지나 한국연구재단등재 학술지 및 등재후보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실적물의 경우 심사를 생략하고 그 평점은 “수”로 한다.

2. 신규임용은 교수공개채용관리지침에 의한다.

제30조(연구실적물의 범위) ① 전공분야에 관한 연구실적물로서 형식과 내용이 논문체제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② 연구실적물은 다음과 같이 발표된 것이어야 하며, 일간지 및 교내신문에 발표된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1. 저서(출판된 것에 한함)

2. 학회지

3. 논문지

4. 정기간행물

5. 예능계에 있어서는 연구.발표.전시 및 입선 등을 포함한다.

③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 논문

④ 학술연구진흥규정에 따라 연구한 연구보고서(개정 2017.3.1.)

제31조(연구실적물의 인정) ① 초.중.고등학교의 교과용도서와 교사용지도서는 인정하되 강의용 자료와 참고서 등은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② 예.체능계는 총장이 인정하는 실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기관의 확인서 등 관계증명자료가 있어야 한다.

③ 공동 연구실적물의 인정 환산율은 다음과 같다.

1. - 3.

구 분	1인	2인	3인	4인이상
논 문	100%	70%	50%	30%
저 서	200%	140%	100%	60%
번역서	100%	70%	50%	30%

4. 석사학위 취득 논문 : 100%

5. 박사학위 취득 논문 : 200%

다만, 석사 및 박사학위(취득자) 논문을 2인(지도교수포함) 공동명의로 기재한 때에도 학위취득자 단독논문으로 인정한다.

④ 예.체능계 실기(연구.발표.전시.입선 등)에 대한 연구실적심사기준은 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연수 환산인정을 <별표1>에 의하되 평점 1점을 연구실적 100%로 인정한다.

제32조(연구경력의 경력인정)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3. 유사경력 나.연구경력 1항 또는 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서 연구에 종사한 경력에 대한 경력인정은 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연수 환산인정을 <별표1>에 의한다.(개정 2016.4.27.)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규정의 폐지) 청주교육대학 교원신규임용규정, 청주교육대학 조교임용규정 및 청주교육대학 교원승진임용내규는 이를 폐지한다.
- ③ (경과조치) 1986년 3월 1일자 재임용된 조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12월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1992년 3월1일 부터 시행하되, 1992년 2월말일 현재 재직 중인 대학교원으로서 그 임용기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각 그 잔여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폐지) 청주교육대학교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2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전임강사이상 교원의 승진과 재임용에 관한 이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적용 한다. 단, 2003년 2월 28일 이전에 임용된 전임교원의 경우 승진, 재임용, 정년 보장에 관한 사항은 차 상급직위로 승진, 재임용, 정년보장된 이후부터 적용한다.
- ③ (기타사항) 본 규정 제10장 연구실적심사와 교수업적평가규정은 독립적으로 적용한다.

부 칙

- ① 이 규정은 2004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14조 2항의 개정 규정은 2004년 3월 1일자 신규 임용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2005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9. 29 규칙 제1164호)

-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28조 ②항의 규정은 2006. 9.30일 현재 재직 중인 교원의 경우 차상급 승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 2. 21 규칙 제1174호)

-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2. 14 규칙 제1191호)

-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6. 30 규칙 제1229호)

-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1. 05 규칙 제1250호)

-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례) 제9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부터 신규 채용되는 대학 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 11. 15. 규칙 제1251호)

-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7. 16. 규칙 제1295호)

① 이 규정은 2012. 7.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4. 27. 규칙 제1409호)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5. 17. 규칙 제1421호)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3. 1. 규칙 제143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포일 현재 재직 중인 교원의 경우 상급 직위로 승진한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 8. 8. 규칙 제144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2. 29. 규칙 제1455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3. 27. 규칙 제147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1]

전임교수임용계약서

청주교육대학교(이하 “갑”이라 한다)와 ○○ ○○ ○○(이하 “을”이라 한다)은 관련법 및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임용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하기로 한다.

1. 임용직위 :
2. 근무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3. 급 여 :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보수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당
4. 근무조건
 - 소속학과
 - 담당과목
 - 담당시간 : 강사료지급규정에 다른 책임시수 이상
 - 연구실 배정
 - 기타 학과에서 정하는 사항
5. 업적 및 성과
 - “을”은 근무기간 중에 전공분야의 연구실적을 200%이상 국내·외 학회지 또는 논문집, 저서, 정기간행물 등에 발표하여야 한다. 다만, 예능계에 있어서는 연구·발표·전시 및 입선 등을 포함한다.
 - “을”은 “갑”이 부여하는 대학 발전과 관련된 연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갑”이 참석을 요구하는 각종 행사나 회의에 참여하여야 한다.
 - “을”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논문지도·진로상담 및 학생지도를 하여야 한다.
 - “을”은 “갑”이 부여하는 대학 내의 보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을”은 본교 교원임용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갑”에게 재계약신청을 하여야 하며, 승진 임용 대상자일 경우에는 승진 임용에 필요한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을”은 “갑”의 재계약 결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재계약여부통지가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갑”에게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 “갑”은 “을”의 이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재심위원회에서 재계약 불가 판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을”과 재계약할 수 없으며 “을”도 이에 따라야 한다.
 - “갑”과 “을”은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쌍방간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에 관한 부분은 변경할 수 없다.
7. 기타
 - “갑”은 “을”에게 기성회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보조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갑”은 “을”의 업적 및 성과에 따라 해당 규정 또는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과급을 지급 할 수 있다.

년 월 일

(갑)

(을)

청주교육대학교총장(직인)

소속

성명 ○ ○ ○ (인)

<별표 1>

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연수 환산인정율

경 력 내 용	환 산 인 정율(%)	비고
1.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규정”이라 함)제4조제2호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이나 시설” (1)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수직에 근무한 경력 (2) 사관학교의 교관(부교수이상의 교수직에 한함)으로 근무한 경력 (3) 다음의 각 목의 연구원 등에서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 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②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③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④ 기타 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체로서의 연구기관 (4) 박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석사 및 박사 재학기간 (석.박사학위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하지 못함) (5) 석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석사과정 재학기간 (2 년을 초과하지 못함)	100	
2. 규정 제4조제3호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1) 학력인정을 받지 못한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근무경력	60	
(2) 대학(전문대학포함)의 시간강사, 초빙교원, 겸임교원 등 교육경력(주당5시간이하) (단, 주당 5시간이하는 30%, 주당 5시간 초과 시에는 시간당 10%를 가산하되 50%를 넘지 못한다.)	50	
(3) 중·고등학교 교원 교육경력이 대학(전문대학 포함)에서 담당할 과목과 부합되는 경우	70	
(4)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40	
(5) 초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전문대학 포함)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	70	
(6) 유치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전문대학 포함)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	40	
(7)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의 발령에 의하여 조교로 근무한 경력	70	
(8) 공인된 체육단체(공인단체의 체육팀 포함) 및 각 대학(전문대학 포함)의 체육코치	50	
(9)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석사 과정 재학기간 (2년을 초과하지 못함)	석사과정 재학연수×0.7	단,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경 력 내 용	환 산 인 정율(%)	비 고
3. 규정 제4조제4호의 규정의“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1) 대학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 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70	
(2) 삭제		
(3)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70	
(4) 다음 각 목의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	70	
①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70	
②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70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판사.검사로 근무한 경력	70	
(9)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변리사의 개업기간	70	
(10)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라 지정받은 지정교육기관중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자로서 1급이상 해기사 면허 소지자의 국제항해 승선경력 및 「항공법」 제29조의3에 따라 지정받은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에서 비행교육에 종사한 경력	100	
(11) 「국가기술자격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대학 또는 대학원의 전공과목과 근무경력이 부합되고 전문대학 교원으로서 담당할 과목이 이에 연계될 수 있는 경우	70	

경 력 내 용	환 산 인 정율(%)	비 고
(12)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의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인턴 또는 레지던트로 근무한 경력	70	
(13)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포함),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포함),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포함) 또는 수의과대학(수의학부 포함) 졸업자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동물병원 개업기간	70	
(14) 국가, 공공단체 또는 해당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전문 의사로 근무한 경력	70	
(15)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전임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70	
(16) 신학대학졸업자가 목사 또는 신부로 재직하거나, 대학 불교학과 졸업자가 사찰에서 승려로 재직한 경력	70	
(17) 외국공관에서 근무한 경력	70	
(18) 공인된 상설 예.체능 및 창작.실기에 관한 단체 주요간부의 경력	70	

연 구 업 적	평 점	비 고
1. 미술 가. 국제전, 미술대전, 상공전 ○ 입선 1회 ○ 특선이상 1회 ○ 국제전 출품 1회	1점 2점 0.5점	
나. 지역규모공모전 ○ 특선이상 2회 ○ 입선 4회	1점 1점	
다. 공인된 개인전 ○ 개인전 1회 ○ 2인전 1회 ○ 기획전 1회	1점 0.5점 0.5점	
라. 공인된 단체전의 회원전 및 공모전 ○ 입선 1회 ○ 특선이상 1회	0.3점 0.5점	
마. 공인된 국내외 초대전 ○ 출품 1회	1점	
바. 국제전 심사위원 1회	1점	
사. 미술대전 등 심사위원 ○ 미술대전 산업디자인전 심사위원 1회 ○ 공인된 공모전 심사위원 1회 ○ 시.도 단위 미술전람회 심사위원 1회	1점 0.5점 0.5점	
2. 음악 가. 국내외에서 인정된 독창회.독주회.개인작곡발표회 1회	1점	
나. 국.내외에서 인정된 협연 및 전문연주단체에 의한 창작품 초연 1회	0.7점	
다. 인정된 발표회의 3중창이상, 3중주이상, 단독음악회 및 3인 이상, 작품 발표회 및 반주 1회	0.5점	
라. 인정된 종합연주회 등 ○ 인정된 종합연주회 중주 및 반주 3회 ○ 협주곡협연, 오페라주역 1회	0.3점 1점	
3. 체육 가. 공인된 체육단체에서 개인 연구발표회 1회 나. 올림픽 경기출전 다. 전국대회 입상 2회 라. 국제공인 심판자격 1회 마. 공인된 체육지도자 연구회 강사 50시간	1점 1점 1점 1점 1점	
4. 창작실기 활동 가. 전국을 단위로 한 공인된 각종 발표회에서 특선 1회 나. 전국을 단위로 한 공인된 각종 발표회에서 입선 2회	1점 1점	
5. 학.예술관계 및 창작실기 활동 분야의 훈장 1회	2점	

<별표2>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평정표

피평정자	소 속 : 청주교육대학교		평정자	청주교육대학교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직 명 :	성 명 :		위 원 :	(인)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기준	평점	평가점수	비고
1. 교육활동 (40점)	◦ 강의시수	20	책임시수 달성	20		학기별 평균
			책임시수 미달시간이 평균 1시간 이하	18		
			책임시수 미달시간이 평균 2시간 이하	16		
			책임시수 미달시간이 평균 2시간 초과	14		
	◦ 강의평가	10	평균 4.5 이상	10		학기별 평균
			평균 4.0 이상 4.5 미만	9		
			평균 3.5 이상 4.0 미만	8		
			평균 3.0 이상 3.5 미만	7		
			평균 3.0 미만	6		
	◦ 기타 교육활동	10	학부 졸업논문지도 평균 2명 이상 또는 학부 교육실습지도 평균 1회 이상	10		연 평균
			해당 실적이 없는 경우	6		
2. 연구활동 (30점)	◦ 연구실적물의 양	10	기준량 달성	10		
			기준량 미달	8		
	◦ 연구실적물의 질	20	“수”로 평가된 실적물이 기준량 200%이상	20		
			“수”로 평가된 실적물이 기준량 180%이상 200% 미만	18		
			“수”로 평가된 실적물이 기준량 180%미만	16		
3. 봉사활동 (10점)	◦ 교내 봉사	10	교수업적평가 교내 봉사 영역 원점수가 평균 15점 이상	10		연 평균
			교수업적평가 교내 봉사 영역 원점수가 평균 10점 이상 15점 미만	8		
			교수업적평가 교내봉사 영역 원점수가 평균 10점 미만	6		
4. 기타사항 (20점)	◦ 수업이행 실태 (보강 등)	5	우수	5		
			보통	4		
			미흡	3		
	◦ 교직원리 준수 실태	5	우수	5		
			보통	4		
			미흡	3		
	◦ 연구윤리 준수 실태	5	우수	5		
			보통	4		
			미흡	3		
	◦ 근무상황	5	우수	5		
			보통	4		
			미흡	3		
합 계 (100점)						
○ 평가기간 : 부교수 승진 다음 연도부터 교수 승진 예정일 이전 연도까지 근무한 기간						
○ 점수산출방법 : 평가기간 중 연구년 등 평가점수산출이 불가능한 연도를 제외한 후 평균값 산출						
○ 적격여부 : 전체 위원의 합계점수를 평균한 값이 80점 이상이면 적격, 80점 미만이면 부적격						
○ 평가기간 중 특이사항에 대하여는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함						

<별표3> 삭제